

▶ 목 차 ◀

I . 투자 여건	5
II . 투자유치 제도	11
III . 법인/연락사무소 설립	18
IV . 조세 제도	29
V . 노무 관리	32
VI . 기타 정보	40
<부록> 투자 법령 및 관련 자료	43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한 TIP



일본시장에 정통한 컨설팅업체 등을 활용

일본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시장 중 하나이다. 구미 유명 대기업들마저도 일본시장 진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철수한 예가 많이 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진출하기 전에 마케팅전략을 수립, 반드시 일본시장에 정통한 컨설팅업체나 공적기관과 상담하여 진출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자사제품 품질을 철저히 비교 평가

일본시장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매우 높은 품질을 요구한다. ‘대수롭지 않은 상처’가 있는 상품은 일본에 있어서는 상품이 아닌 ‘불량품’으로 취급된다. 제품의 자체 품질 뿐만 아니라 일본고객들은 그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판을 내린다. 까다로운 일본고객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동종제품과 자사제품을 철저히 비교하여 자사제품의 장점, 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자사제품을 대담하게 개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의 독자적인 상관습을 이해하는 직원을 채용

일반적으로 일본 상관습의 특징으로 거래조건 외에 개인적인 신용을 중시하는 점과 명문화되지 않은 이면계약이 많아 계약서에 모든 거래조건이 명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상관습이 다수 존재한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외국인이더라도 일본의 상관습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가능한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일본인 직원을 고용할 것을 권장한다.



‘일본어화’가 중요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외국어 능력은 낮고, 영어 등 외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도 일본어로 읽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소개서, 제품 팸플렛, 회사 홈페이지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자료는 모두 일본어로 작성하지 않으면 일본시장에서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보수집 필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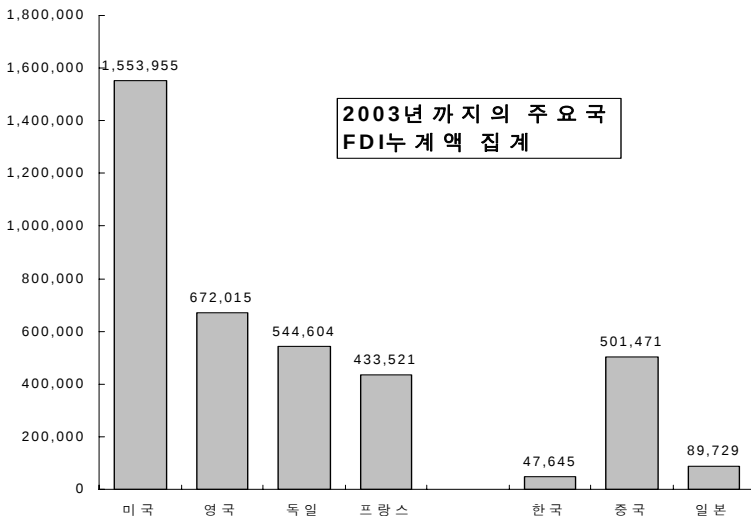
일본시장은 각종 규제가 많으므로 일본 관공서 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일본시장은 아주 빠른 속도로 항상 움직이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최신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I. 투자 여건

■ 일반 환경

- 일본의 대외 투자유치 활동은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됨. 지역사회의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아름다운 국토창조를 목표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활동을 위한 관련법규를 정비함
- 외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국가안보 상 문제가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자본거래도 완전 자유화되어 있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음
- 단, 석유업 금융업 등 일부의 분야에 대해서 규제가 존재함. 그러나 엄청난 지가, 인건비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외국의 대일 직접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주요국 FDI 누적액 / GDP 대비 FDI유치 비율>



국가	GDP 중 FDI 차지비율
미국	14%
영국	37%
독일	23%
프랑스	25%
한국	8%
중국	36%
일본	2%

주)단위:백만 달러(2003년 기준)

자료원: UNCTAD FDI 통계

- 위의 표에서 보듯,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율이 대단히 낮음
- 한편, 투자유치의 요건이 되는 경제의 경우, 1990년대 일본이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에 걸친 불황기를 거쳐 오면서 기업 도산(아마이치증권 등 대기업 포함) 건수 증가, 실업률 상승, 생산위축 등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 현상을 겪음
- 그 후 기업은 인원 및 조직 축소,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도 금융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개혁을 비롯한 제반 경제구조 및 규제개혁을 추진해 옴
- 일본 경제는 이같은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02년에 플러스 성장(실질GDP 성장률 1.1% 달성)을 실현한 데 이어 2003년, 2004년 2% 전후의 성장률, 2005년도에는 3%의 실질 성장률을 달성함
- 이같은 경제성장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일본정부는 제로금리를 해제하고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면서 2006년에는 1960년대의 이나자기 경기(이나자기란 일본의 신으로서 일본은 경기회복세 등이 끝나면 상징적인 의미의 이름을 붙임)를 뛰어넘는 최장기 회복세를 기록하였음. 일본경제는 2007년까지 2%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전까지 해외투자진출 일변도였던 투자부문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해외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 5월 중 대일투자회의(본부장 겸 의장 고이즈미 수상)를 설립하여, 투자대상지로서 가장 매력이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각종 투자유치 시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06년 출범한 아베 수상체제 하에서도 이어짐
- 한편, 일본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서는 2003년 초부터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유치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도쿄의 도심지인 아카사카에 설립하여 분야별 전문상담역을 두고 외국인투자 관련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외국기업의 대일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북미나 유럽 등의 유명기업 혹은 유명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개도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일본의 국가별 투자유치 실적 >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00~04	점유율
미국	9,141	5,139	4,876	3,090	24,372	46,617	38.91
유럽	6,234	8,761	5,805	6,130	6,744	33,673	28.11
EU15	4,267	8,530	5,256	6,018	6,638	30,708	25.63
아시아	378	453	373	1,428	804	3,436	2.87
중국	5	3	3	3	9	22	0.02
한국	48	24	25	34	229	360	0.30
중동	3	2	1	0	4	10	0.01
아프리카	3	28	31	1	-	62	0.05
대양주	62	3	48	14	4	131	0.11
중남미	1,520	518	1,837	4,075	1,254	9,203	7.68
합계	28,276	17,405	17,935	18,722	37,459	119,797	100.00

주) 점유율은 2000~04년도 수치 내에서의 점유율임

자료원: 일본 재무성, JETRO (2007 현재까지 업데이트 분)

- 이는 개도국 기업이 일본의 엄청난 지가, 인건비 등에 따른 투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임. 특히 일본기업은 많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출 후에도 성공이 쉽지 않음
- 한편 해외투자를 고려할 때 그 나라의 생산성과 시장성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함
- 일본의 생산성과 소비시장 규모는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위 수준임(IMF)
 - 세계 GDP 중 점유율: 미국 28%(12조 4860억 달러), 일본 10%(4조 5710억 달러), 중국 5%(2조2250억 달러) 등
 - 1인당 GDP(2005): 미국 4만2101달러, 일본 3만5787달러, 한국 1만6422달러
 - 2004년도 1인당 소비지출(IMF): 미국 27,806달러, 영국 23,430달러, 일본 20,587달러, 한국 7,358달러, 상하이 2,221달러
-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일본식 시장경영방식(A/S 철저, 어음거래 등 특이한 상거래방식 등)이 상존하여 접근이 쉽지는 않음
- 국가위험도 면에서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불경기가 13년 이상 계속되어 왔으나 2002년 이후 회복세를 보임
 -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인한 금융위기설이 제기되어 왔으나 금융재생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부실채권비율(주요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2006년 5월 기준 2%대로 낮추는 데 성공)이 낮아지고 금융부문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어 큰 위기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일본은 국가위험도 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국가로 평가됨

- 다만 객관적으로 낮은 국가위험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종종 역사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투자진출 유망분야

- 유망분야 : 일본 통상백서, 경제백서, JETRO백서에 의거한 대일투자진출 유망분야는 다음과 같음
- 주택 건설 : 2x4공법 또는 새로운 건축자재, 인테리어 소재 및 시스템 디자인을 도입한 건설기법
- 의료·복지: 첨단의료기기, 실버 서비스, 원격 의료 시스템, 생명공학 의료복지 시설 및 기기
- 환경: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친환경 제품
- 에너지: 절전형 전기제품, 폐기물 이용 발전
- 정보·통신: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 통신교육 서비스
- 유통: 대규모 쇼핑센터,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 생활: 스포츠 레저활동 관련제품, 원예, 예술·문화, 건강관련제품, 예술·문화, 애완용품,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
- 직업알선: 인재파견, 직업소개
- 경영지원: Outsourcing, 법률 및 경영자문, 업무대행
- 식품: 건강식품, 유기식품, 바이오 관련 식품
- IT 및 정보통신산업: 온라인 게임 분야 등(한게임, 그라비티 등 우리 기업이 가입자수 1백만명 이상, 동시 접속 10만명 이상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중)

- 특기사항

- 2004년부터 ‘겨울연가’ 등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본 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같은 한류는 영화, 드라마, 배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시작되어 2005년부터는 일반 상품분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2007년도 그 여파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국산 소프트웨어제품은 이미 일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가전제품, 자동차 등도 서서히 인지도를 높이는 중임

II. 투자유치 제도

■ 투자 제한 분야

-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진출이 가능하며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함. 그러나 일본 정부가 별도로 정한 일부 업종은 사전신고를 하거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은 국가의 안전 및 OECD 자본자유화규약에 따라 개방이 유보된 업종으로 핵연료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 무기 제조업, 농림수산업, 석유업, 피혁 제품 제조업 등이 해당함
- 사전허가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은행업, 보험업, 가스 및 전기업, 증권업 등임. 이들 업종은 각각의 사업법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에 영업 개시가 가능함
- 사전신고서는 투자실시 3개월 전까지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소관 성 장관(大臣, 다이진)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고 접수 시 재무성 및 소관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접투자 내용 변경 또는 투자 중지를 권고 가능
- 신고내용이 일본의 국가안보 및 외국환관리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고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투자가능 통지
- 사후신고는 위에 언급된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이 해당됨. 사후 신고는 투자 후 15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성 및 소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우대제도 관련

- 일본의 경우 해외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기업소득세를 특별히 우대하는 지원제도가 있는 것은 아님
- 국내기업/외투기업 공히 사업개시 5년 이내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7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 채무보증의 경우 특정 대내투자사업자(외국자본 비율 1/3 초과이며 설립 8년 이내인 자회사)는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10억 엔의 차입금액을 채무보증 받을 수 있음. 또한 그 보증기간은 설비자금의 경우 원칙 10년 이내(3년 거치),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3년 거치)임
- 이 외에 외국기업 및 외자계 기업은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융자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일본의 대일억세스촉진사업(외자 1/3 이상인 기업이 일본에서 전개하는 사업으로 대일 투자기술 노하우를 통해 일본산업의 고도화, 산업창출, 고용증가에 공헌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금리Ⅱ를 적용하며 융자비율은 50% 이상이 됨
- 대일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인터넷서널 스쿨과 같이 대일투자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학교 등 외국어 교육기관)의 경우 정책금리Ⅱ를 적용하며 융자비율은 50%가 됨
- 기타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은 특별히 없으나 각 지방정부별로 자율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 대일투자유치의 역점을 두는 중점도시는 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가와사키, 기타큐슈, 고베, 교토, 나고야, 오사카, 사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 등임

■ 최근 신회사법 시행에 따른 변화

- 일본의 회사법제를 규정해 온 상법(제2편), 유한회사법, 상법특별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묶는 신회사법이 2005년 6월 제정되어 200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외국기업의 일본 투자진출과 관련성이 높은 개정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회사설립의 용이성
 - 최저자본금제도(주식회사 1,000만엔, 유한회사 300만엔) 및 유사상호 규제, 발기설립 시 관련 금융기관에 의한 보관증명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회사설립 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외국기업의 지점 설립 시, 대표자 전원이 일본에 거주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소 1명만 해당조건을 충족하면 지점 설립이 가능해짐
 - 주식회사 기관설계의 유연화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제도가 유한회사가 갖는 유연성을 겸비한 주식회사 제도로 통합됨. 기관설계는 주식양도제한회사일 경우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고 이사 1명으로 요건을 충족
 - 새로운 형태의 회사유형 창설
 -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영국의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를 모델로 하는 합동회사(일본판 LLC)가 신설됨에 따라 유한책임의 출자자가 임원의 권한 및 이익배분을 협의 결정할 수 있어 인재집약형 공동사업 및 산업협력에 의한 기업 활동의 촉진이 기대됨

· 합병의 유연화

- 과거 합병대가를 존속회사의 주식으로만 교부할 수 있었으나 현금 및 신회사의 주식으로 대체 가능해 짐

- 한편, 2007년 5월부터는 ‘합병대가의 유연화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현금 합병 및 3개사 간 합병 등의 사항이 가능해져 기업재편과 관련된 법률들이 거의 재정비되는 단계

- 참고로 한중일의 투자유치 지원 제도(세제 등)는 다음과 같음

<한중일 3국 투자유치 인센티브 관련>

한국	중국	일본
1. 소득세 감면		
가. 외투기업 법인세, 소득세	가. 기업소득세	가. 기업소득세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 지원 서비스업(R&D)업종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사업도 감면가능) 영위 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FIZ)내 입주 기업에 대해,	경영기간 10년 이상인 생산성 외투기업에 대해 수익창출년도부터 2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징수 나. 수출형 기업 생산형 기업 내 연도의 수출제품 생산액이 기업의 총 제품 생산액의 70% 이상이 되는 경우 2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징수 후에도 50%의 세액을 징수함. 단, 이미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경제특구의 기업 등)는 10%의 세율을 적용 다. 선진기술기업 관할 세무당국의 인가를 받은 선진기술기업은 2년간 면	• 일본의 경우,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우대하는 세제가 있는 것은 아님 • 국내기업/외투기업 공히 사업개시 5년 이내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7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나. 채무보증 • 채무보증의 경우, 특정대내투자사업자(외자비율이 1/3 초과인 자회사이며, 설립 8년 내 기업 등의 조건충족필요)는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10억 엔의 차입금액을 채무보증 받을 수 있음. - 보증기간은 설비자금의 경우 원칙 10년 이내(거치 3년),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
- 2004년도 이전 투자기업은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하며, 2005년도 이후 투자기업은 수익창출년도(5년간 없으면 5년부터)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함 -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2004년도 이후 투자기업에 대해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함 - 이상에 대한 기산일은 소		

득이 최초로 발생하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임 - 이상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을 감면함 ※ 한국의 법인세율은 납세액 1억원 이하는 16%, 1억원 초과하는 27% ※ 한국은 WTO 회원국으로,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하여 수출입 관련 보조금 및 조세감면이 불가함	제, 다음 3년간 50% 징수 적용 후에도 여전히 선진기술 기업인 경우 3년간 세율을 반감하여 징수. 단, 이미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경우(경제특구의 기업 등)는 10%의 세율을 적용 라. 경제특구의 서비스 기업 경제특구에 설립된 서비스업 중사 외투기업으로 외자 규모가 5백만 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2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징수 마. 금융기관 경제특구와 국무원이 기타 장소에 설립된 외자은행, 중외국 합자경영은행으로 자본금(지점의 경우는 본점의 투자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고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2년간 면제, 다음 3년간 50% 징수 바. 첨단기술기업 첨단산업개발구에 설립한 첨단기업으로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년간 면제 혜택 적용 사. 인프라 관련기업 상해포동신구(上海浦東新區), 해남(海南) 경제특구의 인프라 정비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5년간 면제, 다음 5년간 50% 징수	(거치 3년) 등임 다. 융자제도 ● 외국기업 및 외자계 기업은 일본 정책 투자은행의 융자제도를 이용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대일역세스촉진사업(외자 1/3 이상인 기업이 일본에서 전개하는 사업으로 대일 투자 기술 노하우를 통해 일본산업의 고도화, 산업창출, 고용증가에 공헌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금리Ⅱ를 적용하며 융자비율은 50% 이상이 됨 - 대일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인터내셔널 스쿨과 같이 대일투자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학교 등 외국어 교육기관)의 경우 정책금리Ⅱ를 적용하며 융자비율은 50%임
나. 증액투자 ● 조세감면 업체가 증액하는 경우에 증액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다. 기타 감면 ● 조세감면 - 대상 업체의 배당금에 대해 2004년 이전 투자기업은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적용, 2005년 이후 투자기업은 5년간 100%, 2년 50% 감면함 ● 기술도입대가 -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		

	아. 재투자시 환급 ● 등록자본 증액, 신규기업 투자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	
2. 관세 및 증치세 감면		
가.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 수반사업, 외국인 투자지역(FIZ) 입주기업의 경우 - 외국인이 직접 현물로 출자하는 자본재와 외국인 투자금액으로 취득하는 자본재로서 외국인 투자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된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100% 면제 -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신청하며,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투자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 신고를 완료해야 함 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감면 ● 조세감면 대상 업체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와 유사하게 감면하나, 조례에 의거 15년까지 연장 가능함	가. 수입관련 諸稅 ● 외투산업목록의 장려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나. 수출관세 ● 외투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시 수출제한품목, 국가가 별도 규정한 품목 외에는 수출관세 면제 다. 도시보호 건설세 ● 외투기업 면세 라. 토지점용세 ● 외투기업 면세	가. 세액 공제 ※일본은 대일투자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존재하지 않음
3. 지역별 우대		
가. 외국인투자지역 ● 상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종도세, 관세 등의 조세감면 지원	가. 경제특구 ● 深圳, 珠海, 汕頭, 廈門, 海南	가. 13政令指定都市 ● 대일투자유치에 역점을 두는 중점도시를 지정 운영중

나. 수출자유지역 ●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과 동일 다. 관세자유지역 ●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동일	나. 연해개방도시 ● 대련, 천진 등 다. 연해경제개방구 ● 珠江, 華南, 長江 델타, 山東, 遼東반도 라. 경제기술개발구 ● 북경, 상해, 대련, 천진 마. 변경대외개방도시 ● 北方, 西南, 東方국경도시 바.沿江개방도시 ● 주요 하천 인근 도시. 내륙개방도시 ● 중서부 18개 省의 省都	● 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카와사키, 기타큐슈, 코베, 교토, 나고야, 오사카, 사 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 등 ※각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음
--	---	--

자료원: KOTRA 및 JETRO 투자관련 정보 취합

Ⅲ. 법인/연락사무소 설립

가. 진출 형태

■ 연락사무소

- 연락사무소는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행위를 실시하는 거점으로서 설립된 것을 의미.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의 구입, 광고·선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할 수 없으며,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등기할 필요가 없음
- 한편 연락사무소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설립하는 것 및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은 통상 불가능하므로 외국기업의 본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

■ 지사

-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또는 자회사(일본법인)를 설립해야 함. 지사 설립은 외국기업이 일본에 영업활동 거점을 설립하는 데 있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지사로서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고 지사의 대표자를 결정한 후 필요 사항을 등기하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 지사는 외국기업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결정된 업무를 일본에서 실시하는 거점이며, 통상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법률상 지점 고유의 법인격은 없으며, 외국기업의 법인격에 내포되는 일부분으로 취급

-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사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책임은 최종적으로는 외국기업에 직접 귀속. 이러한 지사 명의로는 은행 계좌를 설립할 수 있고 부동산의 임차도 할 수 있음

■ 자회사(일본법인)

-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자회사(일본법인)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법인 형태 중에서 선택하게 됨.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라는 법인격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이 출자자가 될 수는 없음
- 법률상 정해진 소정절차를 거친 후登記하는 것으로 일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자회사(일본법인)는 외국기업과 별도의 법인이 되므로 자회사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하여 외국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됨
- 또, 자회사(일본법인)설립 외에 외국기업이 일본법인을 통해 대일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일본기업이나 투자회사 등과의 합작회사 설립이나 일본기업에의 자본 참가 등이 가능

■ 유한책임사업조합(LLP)

- 법인은 아니지만 유한책임사업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음. 유한책임사업조합은 일본판 LLP로 불리는 사업체로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만으로 구성되는 조합 조직임. 출자자끼리의 합의로 조합 내부의 규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조합 자체에는 납세 의무가 없으며 출자자의 이익 분배에 대해 과세되는 특징이 있음
- 다만 은행업이나 증권업, 보험업에 종사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일

본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함. 하지만 연락사무소의 일본 내 사업 활동은 본사를 위한 자산구입 또는 보관, 광고·선전, 정보제공, 시장조사, 기초 연구 등 본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보조적 활동에 한정되며, 일본에 항구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간주되는 경우 당해 연락사무소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대일 투자형태 및 차이점

구분	연락사무소	지사 (외자 영업소)	유한회사 (LLP)	주식회사 (자회사)
비즈니스활동	X	O	O	O
등기	-	O	O	O
자본금	-	-	300만엔 이상	1000만엔 이상
대표이사	-	(지점대표는 필요)	-	1인 이상
이사	-	-	1인 이상	3인 이상
감사	-	-	-	1인 이상
법인세과세범위	-	국내원천소득	전 세계 소득	전 세계 소득
회계처리	-	본국소득과 합산처리 필요	일본법인의 회계처리로 완결	일본법인의 회계처리로 완결
본국 송금시의 과세	-	법인세 징세 후 송금은 세금없음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과세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과세
소송	-	본국법인에 영향을 미침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	약 3주~1개월	약 1개월~1개월 반	약 1개월~1개월 반

- 연락사무소는 지사 또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및 시장조사의 거점으로서 설립되는 것이 보통임. 또한 연락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관리비 관련 자금의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에 대한 외환관리상의 제약은 없음

- 단순히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사 형태를 취할 것인지 현지법인 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이는 일본에서의 사업전망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을 세운 후 세무 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현지법인 설립과 지사 설립을 비교해 보면, 유연성 면에서는 지사 설립이 우세함. 지사인 경우 별도의 경영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고 운영방법 및 자본금 등에 대한 세세한 법률규정도 없음. 현지법인의 경우 이사, 감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으로 정하는 임원이나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고 자본금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지사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정하면 되고 자본금도 지점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있으면 됨
- 반면에 현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면에서는 현지법인이 우세함. 현지법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청산절차도 엄격한 반면, 지사는 간단하게 폐쇄할 수 있어 폐쇄 후에는 일본 연락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임
- 일본의 조세체계 상 일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과 외국 법인의 일본 지사에 대하여 과세되는 주요 세금에는 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 사업세, 소비세 등이 있는데, 이들 세금의 적용되는 세율은 현지법인이나 지사나 차이가 없음
-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따라서 과세소득의 범위, 세액공제방법, 결손금의 이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 세무에 정통한 유명 회계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음
- 일본에 연락사무소나 지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대표자로 한국 사람을 파견한다는 사실임. 일본 국민이나 재일 한국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VISA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음

- 한국 사람을 일본에 파견해 지사를 설립·운영하고자 한다면 취업 VISA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경영’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정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발급받아야 함 (연락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는 통상 「기업 내 전근」이라는 비교적 간편한 체류자격을 신청함)
-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따라서 설립절차의 전체 과정은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음. 하지만 체류자격인정증명서가 모든 경우에 발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통상 일본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데는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첫째,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
 - 둘째, 무비자(3개월, 1회)로 입국하여 사무실 및 직원과 거주지를 확보하고 지점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단계
 - 셋째,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아 귀국한 후 VISA를 신청·취득하고 재입국하여 본격적으로 설립 절차를 완결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마무리 단계

나. 거점 설립 요령

- 외국인투자자가 대내직접투자를 할 때는 사후보고서 혹은 사전 신고서를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장관 및 관할부처 장관에 제출해야 함

<각 성 청의 담당부서>

▶재무성(국제국 조사과 외환실) 03-3581-4111	▶농림수산성(종합식료국 식품산업기획과) 03-3502-8111
▶후생노동성(의정국 경제과) 03-5253-1111	▶총무성(종합통신기반국 국제부국제경제과) 03-5253-5111
▶국토교통성(종합정책국 국제기획과) 03-5253-8111	▶환경성(대신관방총무과 법령계) 03-3580-1374
▶문부과학성(대신관방(大臣官房)총무과 법령심의실) 03-5253-4111	▶경찰청(생활안전국생활환경과) 03-3581-0141
▶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 무역진흥과) 03-3501-1511	▶금융청(총무기획국 기획과) 03-3506-6000

- 주요 보고서 양식은 재무성 및 일본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재무성 : <http://www.shinsei.mof.go.jp/index.htm>
- 일본은행 : <http://www.boj.or.jp>

■ 사전준비단계

- 무엇보다 현지 사전조사와 각종 증빙서류의 준비가 중요함
- 사전 조사해두면 좋은 것
 - 필요에 따라 2~3개월 머무를 수 있는 장기 체재용 호텔과 임시 사무실
 - 사무실 물건 리스트
 - 주거 물건 리스트
 - 채용조건 및 근로기준 등
-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일어 번역본 필요)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 제출할 증빙 위주로 사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단계

- 일본 거점 설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비자(3개월, 1회)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체류자격인정증명서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현지에서 단기 체류하며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함

■ 사무실 확보

- 설립 등기 및 각종 신고,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은행 구좌 설립, 직원 채용을 비롯한 대부분의 거점 설립 작업에는 사무실의 주소가 결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실은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음
- 연락사무소 설립의 경우 재택근무를 할 생각으로 오피스텔(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개념의 오피스텔은 흔하지 않음)과 같이 주거와 분리된 사무공간의 임차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음
- 다만, 체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있어 입국관리국의 재량이 많이 적용되는 것을 고려할 때, 대체로 주거와 사무실을 분리하는 편이 유리함. 일본에서 건물 임차 시 상관습은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사전에 일본의 상관습을 잘 이해한 후 교섭에 임할 필요가 있음

■ 주거확보

- 현지 거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서둘러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향후 자신이 생활할 주거를 확보하는 것. 생활의 거점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지사의 대표로 취임하여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주거지가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주거지를 찾는 데는 신문이나 정보지의 광고에 의존하여 찾는 것보다는 부동산 중개회사(브로커)에 의뢰하는 편이 선택의 폭도 넓고 시간도 절약됨. 사무실의 경우에는 브로커를 활용하는 것 이외에 직접 소유주를 접촉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직접 접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다만 월 100만엔 이상의 고액물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부동산회사나 금융기관이 주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직접 접촉하는 것도 가능
- 임대차계약서는 일본 내 계약이므로 통상 일본어를 사용함. 사택 임차 시 계약주체는 실제 거주하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며, 고액 물건일수록 소유주는 회사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물론 개인 명의 계약도 일본에 거주하는 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음. 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수배해 주기도 함
-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체결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 전에 통지하면 벌과금을 물지 않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별도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혹은 월 임차료 1개월 분 정도의 갱신료를 지불하고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음
- 주거 임대에 드는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일본 주거 임대 비용>

구분	내용	지불처
계약 시	· 시키킨(敷金) : 보증금 성격으로 통상 집세 3~5개월 분(이 중 절반 정도는 계약 해지시 반환되지 않음) · 첫달 분 집세 · 중개수수료(통상 집세 1개월 분)	· 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집주인 혹은 중개회사
매 월	· 다음달 집세 및 관리비	· 집주인 또는 관리회사

- 시키킨(敷金)은 일종의 보증금으로 퇴거 시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원상복구비로 일정 부분 공제하는 경우가 많음. 레이킨(礼金)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 월 임차료 2개월분 정도를 집주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주택계약 시 시키킨, 레이킨, 보증금이라는 표현이 사안에 따라 쓰이고 있으나 모두 합하여 대체로 월 임차료 3~5개월분의 임차 부대비용이 발생함. 이 중 절반가량은 퇴거 시 반환받을 수 있음

■ 지사(사무소)의 설립

-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은행업이나 증권업, 보험업의 경우 해당사업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허가나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음. 또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등기가 필요 없으며, 세법상으로도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사의 설립절차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함
- 사무실, 주거, 직원 등이 확보되고 나면 실제로 지사 설립절차에 들어가게 됨
- 지사 설립절차는 설립등기로 일단 완료되는데 등기절차를 밟기까지의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각종 인허가사항의 유무 확인

- 지점을 설립하기 전 관공서의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관청에 인허가 유무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취득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 外爲法상의 사전신고 여부 확인

- 지점설립은 外爲法(外國爲替 및 外國貿易法) 제26조 2항 5호에 따른 대내직접투자제에 해당되므로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대장성대신 및 소관대신에 대하여 사후 보고 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함. 특히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보고가 원칙이며,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도 필요없는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일본은행 또는 외국환취급은행이나, 변호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함

- 일본은행 국제국 투자과 대내직접투자계

(주소) 東京都 中央區 日本橋 本石町 2-1-1

(전화) 03-3279-1111

• 개인의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 취득

- 인감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취득하여야 지점의 대표로서 설립등기를 할 수 있음. 인감은 주거지의 사무소(市役所·區役所)에 등록함으로써 인감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음

• 회사의 인감 등록

- 등기신청서에 날인해야 하는 대표자가 등기소에 신고하는 인감으로, 개인인감과 겸용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별도로 등록함. 지사설립등기 직후에 대표인을 인감증명서 교부 신청서에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소로부터 지사 대표자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됨

· 지사설립등기

- 지사를 신설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법무국 산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지사의 신설은 정관이나 연차보고서의 번역 등 방대한 작업이 되어 비용, 시간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 宣誓供述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지사 등기를 할 수 있음
- 우선 지사의 경우에는 정관을 새롭게 작성하는 대신 본국 모 회사의 정관 원본을 가져와 모회사의 기본정관, 부속정관, 일본지점 대표자에 대한 임명장 또는 고용 계약서, 선서 공술서 등을 지참하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대사관에 주재하는 공증인 앞에서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선언한 후에 대사관에서 서류를 인증받는 절차임

Ⅳ. 조세 제도

가. 관공서에 대한 각종 신고 및 보고

- 세무신고는 국세는 국세청 산하의 세무서에, 지방세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 소속 사무소(都道府縣稅事務所)에 각각 신고하는데 보통 세무 사무소에 대행시키는 경우가 많음
- 세무신고 중에는 청색신고승인신청서라는 것이 있는데 기업은 청색 또는 백색 중 어느 하나의 신고법인 선택이 가능함. 백색 신고법인에는 특별히 우대세제가 없지만 청색신고법인은 '특정 대내투자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회사 설립일 이후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종료하는 각 사업 년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10년 이내로 이월할 수 있는 등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청색신고법인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거래를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법정기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음. 일본지점 설립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 후 3개월을 경과한 날과 설립 후 최초 사업 년도의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나. 일본의 각종 세금구조

- 일본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지방세는 광역지자체(47개의 都道府縣)의 도도부현세와 기초지자체(약 3,200개의 市町村 또는 區)세로 이루어지게 됨
- 국세의 부과 및 징수는 재무성의 외국(外局)인 국세청에서 함. 국세청은 1개의 중앙 사무국, 12개의 국세국 및 524개의 세무서로 구성되어 있음

- 조세 불복에 대한 이의접수는 국세불복심판소에서 담당함
- 지방자치체는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세무서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사무소를 두고 있음

다. 형태별 과세소득 범위 및 연락사무소의 직원 관련 과세

■ 일본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 일본법인(내국 법인)은 일본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 외국법인의 일본 자회사는 일본법인에 해당함. 일본법인은 국내 원천소득 및 국외 원천소득을 합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만 외국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외국법인(지점)의 과세소득 범위

- 외국법인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따라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① 일본 국내에 지점 등 사업을 하는 일정한 장소(항구적 시설)를 갖고 있는 외국법인은 모든 국내 원천소득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시설에 귀속되는 국내 원천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음. 또한, 외국법인의 일본 지점에서 본점으로 보내는 이익송금 및 본지점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② ①이외의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1년, 또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건설 작업 또는 그 지휘감독 임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기타 특정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해당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일정한 국내 원천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신고의무가 있음

③ ① 및 ②와 같은 항구적 시설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에서 인적 용역제공사업에 의한 소득, 부동산 보유 내지는 양도에 의한 소득, 내국 법인의 주식양도에 의한 소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납세의무가 발생하나 조세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음

④ ①~③이외의 외국법인은 일반적으로 일정 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해 원천세가 부과됨

- 또한 조세조약에는 외국법인의 항구적 시설에 대한 정의, 사업 장득, 소득의 원천지(源泉地) 및 과세방법에 대해 국내법과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락사무소

- 일본에서 연락사무소로서 본점을 위한 광고, 선전, 정보 제공, 시장조사, 기초연구, 기타 보조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연락사무소의 직원 관련 과세

- 외국본사에서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주재원 및 직원으로서 급여가 본국에서 지불되는 경우는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신고로 납부
- 재일주재원이 직원(정사원, 파트타임 포함)을 고용할 경우, 연락사무소는 고용주로서 세무서에 「급여지불사무소」 신고를 하고 국내 지불 급여와 관련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음

V. 노무 관리

■ 직원 확보

-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지점 설립을 위하여 '투자·경영'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 현지직원의 채용이 의무화됨
- 본래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채용조건 결정과 동시에 급여 및 수당규정, 인사 고과규칙, 취업규칙, 연금플랜 등의 인사제도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지만, 실제 인사제도 구축 시에는 이것저것 처리할 것이 많으므로 채용 예정자의 얼굴을 보아가며 제도화해 가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일본에서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인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뿐만 아니라 노사관련 각종 관행을 준수하여야 함
- 일본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일본의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보험가입의무가 발생. 사회보험제도에는 후생성 관할 사회보험(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및 노동성 관할 노동보험(고용보험,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의 네 종류가 있음.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은 원칙적으로 일괄 가입하여야 함. 모든 법인 조직 및 5인 이상의 직원이 상근하는 개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예컨대, 3명의 현지직원이나 있는 연락사무소)도 임의로 가입 가능함.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市區町村 사무소에서 건강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음

- 한편, 직원의 퇴직금은 고용계약에 따름.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류자격인정증명서와 취업비자의 취득문제임. 비자발급은 입국허가를 추천하는 의미로 외무성(재외공관) 소관이며,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는 일본 내에서 상당 기간 이상의 체재를 인정하는 의미로 법무성 입국관리국 소관임
- 체류자격은 통칭 VISA STATUS라고 부르는데 27종류가 있으며, 이 중 취업 VISA STATUS 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14종류가 있음. 그 중에서 지점설립의 경우에는 '투자·경영' 이라는 체류자격이 필요하고, 연락사무소 설립의 경우에는 '기업 내 전근' 이라는 체류자격이 필요
- 체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대리 신청은 인정신청까지 허용되는 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본인은 한번도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지 않고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기도 함
- 신청은 변호사, 사법서사, 기타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인정신청 수속을 신청중개자 증명서가 있는 행정서사에게 재위탁하고 있는 실정임. 신청대행 비용은 25만~80만엔 정도임
- '투자·경영'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양식 1, 2B(상용, 취직), 3B(상용, 취직) 1통
- 사진 2매
- 입증자료(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3에 게재된 자료로 공공 간행물 등에 회사 개요가 명시된 경우에는 불요)
-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거나 동종 사업에 투자하여 경영을 하는 경우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 총 인원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 안내서 또는 고용보험납부서 사본, 상근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직원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업장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 안내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사업장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하거나 동종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을 대신하여 경영을 하는 경우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 총 인원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 안내서 또는 고용보험납부서 사본, 상근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직원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 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업장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 안내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사업장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보수 등이 기재된 문서: 계약서 사본, 파견장 사본, 인사이동통지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일본 내에서 개시 또는 투자된 무역, 기타 사업의 관리에 종사 또는 무역 기타 사업의 경영을 개시, 혹은 이런 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을 대신하여 그 관리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상근직원 총 인원수를 입증하는 자료: 회사 안내서 또는 고용보험납부서 사본, 상근직원수가 2인인 경우 당해 직원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고용계약서 또는 임금 대장 사본, 주민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업장의 개요에 관한 자료: 회사 안내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사본 등 사업장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있어서 3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다음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서: 재직하고 있던 기관이나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직무 내용 및 재직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대학원에서 경영 혹은 관리에 관계되는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입증하는 문서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의 내용, 기간, 지위, 보수 등이 기재된 문서: 계약서 사본, 파견장 사본, 인사이동통지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 ‘기업 내 전근’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 사진
 - 입증자료(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기재된 자료, 단 공공간행물 등에 회사 개요가 명시된 경우 불요)
 -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외국 사업장과 일본 사업장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서: 안내서, 사업자등록 관련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 일본 사업장의 개요를 설명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회사 안내서
 - 외국 사업장에서의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문서: 외국 사업장 발행 재직증명서 등 전근 전 1년간 종사하였던 직무내용 및 근무기간을 입증하는 것
 - 외국 사업장의 개요를 명확히 하는 자료: 상업·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최근의 손익계산서 사본(신규사업의 경우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회사 안내서
 - 다음의 어느 하나로 활동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입증하는 문서 : 전근명령서 사본, 파견대상기관의 사령장 사본, 이에

준하는 문서

- 졸업증명서 및 경력을 입증하는 문서: 졸업증명서 또는 그 사본. 신청인의 이력서

- 입국관리국에서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XX를 입증하는 서류"라는 식으로 규정할 뿐, 서류의 세부사항이나 양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서류의 기재방식이나 표현 방법의 타당성과 보조 자료의 제출 등 운영 면에서의 세부적인 판단은 창구의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임. 체류자격인정증명서는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신청 후 2~3개월이면 교부받을 수 있음. 다만 신청한 체류자격과 다른 자격으로 증명서가 발급될 수도 있는데, 체류자격의 최종결정은 전적으로 입국관리국 소관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VISA 취득 및 재입국

- 일본에서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고 나면 국내에 주재하는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됨. 일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비자발급신청서 1부,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신청인의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함
- 비자 신청을 하면 일본공관에서는 여권의 비자 페이지에 VISA STATUS를 표시하는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체류자격번호를 기입함.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해도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각각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취득 시 상담 또는 대행을 의뢰하였던 전문가와 계속 연락을 유지하여야 함
- 취업비자로 일본에 입국하면 입국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여권에 체류자격의 도장을 찍어줌. 이것으로 일본에서의 장기체재가 가

능하게 되는 것임. 일반적으로 '기업 내 전근' 은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여야 하며, '투자·경영'은 1~3년마다 갱신함. 비자 갱신 역시 다소의 수고가 필요한데 주거지를 관할하는 입국 관리국(사무소 소재지 관할 입국 관리국이 아닌 점에 주의)의 지침에 따라 갱신하면 됨

- 참고로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함.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주거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후 그 주거지 관할 사무소에 등록을 함. 신규 등록 절차는 사무소의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외국인 등록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여권 및 사진을 제출하면 됨. 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카드 형식의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교부 받음

■ 기타 고용 관련 법률 및 담당기관

- 일본의 고용관련 법률은 고용이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측면에 따라 각각 규정되어 있음. 주요 사항 및 관련 행정기관은 아래 표와 같음. 원칙적으로 법률에서는 사업주가 일본인인지 외국인인지 또는 일본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에 상관없이 일본 국내에 있는 한 해당 기업에 적용됨.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각 법률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한 이러한 법규가 적용됨
- 기타 일본의 고용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노무사 및 관련 업계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진출코자 하는 업계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함

<일본의 기타 노무 관련 법률 및 해당관청>

구분	법률	관련행정기관	개요
구인, 모집	직업안정법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공공과 민간 직업소개사업제도에 대해 규정함

	남녀고용기회균등법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균등실	고용 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노동조건	노동기준법	노동기준감독서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함
	최저임금법		최저 임금에 대해 규정함
	노동안전위생법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규정함
	육아,간호(介護)휴직법		육아휴직, 간호휴직 제도에 대해 규정함
	남녀고용기회균등법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균등실	고용 분야에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사회보장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노동기준감독서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하는 제도에 대해 규정함
	고용보험법	공공직업안정소	근로자가 실업하였을 경우 등에 필요한 급여를 하는 제도에 대해 규정함
	건강보험법	사회보험사무소	동 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입은 업무 이외의 사고 등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하는 제도를 규정함
	후생연금보험법		근로자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급여하는 제도를 규정함
	국민연금법	사회보험사무소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기초적인 연금급여를 하는 제도
	간호(介護)보험법	사회보험사무소/ 시구정촌	동 피보험자가 간호(介護)가 필요한 상태 또는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상태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급여를 하는 간호(介護)보험제도에 대해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구정촌	자영업자 등의 피용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규정함
파견노동	노동자파견법	공공직업안정소	파견근로자의 취업 관련 조건을 규정함
노사분쟁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전반과 관련된 규약을 규정함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함
	개별노사분쟁 해결촉진법	도도부현 노동국	개별 노사간 일어난 문제를 정부가 중재하여 해결하는 제도에 대해 규정함
조직재편	노동계약승계법	후생노동성 정책통괄관	회사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의 노동계약 취급에 대해 규정함

VI. 기타 정보

■ (주)대일투자 서포트 서비스(FIND)

- 주소: Sixth Floor, Akasaka Annex, 2-17-42 Akasaka, Minato-ku, Tokyo , Japan
- 전화: (81-3) 3224-1203
- 팩스: (81-3) 3224-9871
- 홈페이지: www.fid.com

■ JETRO 비즈니스 서포트센터(BSC)

- 전화: (81-3) 5562-3131
- 팩스: (81-3) 5562-3110
- 홈페이지: www.jetro.go.jp/EXPORT/jet02-4.html

■ 법무성 입국관리국

- 전화: (81-3) 3580-41111

■ 외국인 체류 종합 정보메이션센터(동경)

- 전화: (81-3) 3213-8523~7
- 입국관리국에서는 외국인과 그 관계자로부터의 상담이나 안내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및 요코하마의 각 지방입국관리국과 지국에 외국인 체류 종합 정보메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여기에서는 전화와 방문에 의한 문의에 일본어뿐 아니라 외국어로도 상담 중(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국가 개요

- 국 명: 일본(Japan)
- 면 적: 377,829km²(한반도의 1.7배)
 - 북위 45°33'에서 20°25'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
- 수 도: 도쿄(東京, Tokyo)
- 주요도시: 동경(8,483천명), 요코하마(3,579천명), 오사카(2,628천명), 나고야(2,215천명), 삿포로(1,880천명), 교토(1,474천명), 후쿠오카(1,400천명), 히로시마(1,154천명)
- 인 구: 1억2,775만명(총무성 통계국 2007.1.21일 기준)
- 민족구성: 몽고족(大和族: 야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 언 어: 일본어
- 종 교: 신도(49.4%), 불교(44.7%), 기독교(0.8%)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천황(明人: 아키히토)
安倍晋三(아베신조) 총리(2006.9월 취임)
- 화폐단위: 엔(Yen, JPY 또는 ¥으로 표기)
- 환 율: JPY 120 / US\$ 1 (2007.2.21일 기준)
- 기 후: 사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기후
남북간 길이가 3,300km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 시 차: GMT + 9 (한국과 동일)

<부록> 투자 법령 및 관련 자료

1. 대내직접투자등에 관한 정령(政令) 45
2. 대내직접투자등에 관한 명령(命令) 64

* 부록

투자법령1. 대내직접투자등에 관한 정령(政令)	36
투자법령2. 대내직접투자등에 관한 명령(命令)	53

- 일본의 투자유치에 관련된 법령은 ‘외국외환 및 외국무역법’내의 ‘대내직접투자등에 관한 정령(政令)’ 및 ‘대내직접투자등에 관한 명령(命令)’으로 이루어져 있음.
- 본 부록에는 ‘대내직접투자등에 관한 정령(政令)’ 및 ‘대내직접투자등에 관한 명령(命令)’을 게재함.
 - 이상 내용은 일본 온라인 법령 게시인 <http://law.e-gov.go.jp>에 2007년 6월 1일자로 게재되어 있는 내용임.
- 한편, 일본의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는 영문 투자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JETRO의 http://www.jetro.go.jp/en/invest/setting_up/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절차를 설명하고 있음.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 (대내직접투자등에 관한 정령)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

(昭和五十五年十月十一日政令第二百六十一号)

最終改正：平成一八年三月一七日政令第四二号

内閣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二十八号）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第二十九条、第三十条、第六十七条、第六十九条、第六十九条の三第二項、第六十九条の四及び附則第二条から第四条までの規定に基づき、並びに同法の規定を実施するため、並びに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昭和五十四年法律第六十五号）附則第六条の規定に基づき、この政令を制定する。

第一章 総則（第一条）

第二章 対内直接投資等（第二条―第四条）

第三章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第五条―第六条の二）

第三章の二 報告（第六条の三―第六条の五）

第四章 雑則（第七条―第十条）

附則

第一章 総則

（趣旨）

第一条 この政令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以下「法」という。）第五章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等及び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関する事項の管理若しくは調整又は報告に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第二章 対内直接投資等

(対内直接投資等の定義に関する事項)

第二条 法第二十六条第一項第三号 に規定する他の会社を通じて間接に保有され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会社の議決権の数は、当該会社の株主又は出資者である他の会社（同項第一号 又は第二号 に掲げるもの（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おいて「外国法人等」という。）の出資比率が百分の五十以上であ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が直接に保有する当該会社の議決権の数に、外国法人等の当該他の会社に対する出資比率を乗じて計算した議決権の数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他の会社が二以上あるときは、当該議決権の数は、当該二以上の他の会社につきそれぞれ計算して合算したものとする。

2 前項の「出資比率」とは、外国法人等が直接に保有する会社の議決権の数が当該会社の総株主又は総社員の議決権の数に占める割合をいう。

3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一号 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株式は、証券業協会（証券取引法 （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号）第六十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証券業協会をいう。）の規則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店頭売買につき売買値段を発表するものとして登録され又は指定されている株式とする。

4 上場会社等（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一号 に規定する上場会社等をいう。以下同じ。）の株式を取得したもの（以下この項において「株式取得者」という。）と同条第二項第三号 に規定する株式の所有関係等の永続的な経済関係、親族関係その他これらに準ずる特別の関係にあ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非居住者である個人又は法人その他の団体（同条第一項第二号 から第四号 までに掲げるものに該当す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項及び次条第一項第三号において「法人等」という。）は、次に掲げるものとする。

一 株式取得者により総株主又は総社員の議決権の数（以下この項及び第五条第一項第一号ニにおいて「総議決権」という。）の百分の五十以上に相当する議決権の数を直接に保有されている法人等

二 前号に掲げる法人等により総議決権の全部を直接に保有されている法人等

三 第一号に掲げる法人等（株式取得者によりその総議決権の全部を直接に保有されているものに限る。）により総議決権の百分の五十以上百分の百未満に相当する議決権の数を直接に保有されている法人等

四 株式取得者が法人等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株式取得者の総議決権の百分の五十以上に相当する議決権の数を直接に保有している法人等

五 前号に掲げる法人等の総議決権の全部を直接に保有している法人等

六 第四号に掲げる法人等（株式取得者の総議決権の全部を直接に保有しているものに限る。）の総議決権の百分の五十以上百分の百未満に相当する議決権の数を直接に保有している法人等

七 第四号に掲げる法人等により総議決権の百分の五十以上に相当する議決権の数を直接に保有されている法人等

八 前三号に掲げる法人等のいずれかにより総議決権の全部を直接に保有されている法人等

九 株式取得者（法人等に限る。）の役員（取締役その他これに準ずるもの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及び前各号に掲げる法人等の役員

十 前号に掲げる者が役員の過半数を占めている法人等

十一 株式取得者の配偶者

十二 株式取得者の直系血族

十三 株式取得者が我が国以外の国（その一部である地域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政府機関若しくは公共団体又はこれらに準ずるもの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国の他の政府機関若しくは公共団体又はこれらに準ずるもの

5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三号 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率は、百分の十とする。

6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五号 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設置又は変更は、次に掲げる事業に係る本邦における支店、工場その他の事業所（以下「支店等」という。）の設置又は本邦にある支店等の種類若しくは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以外の当該支店等の設置又は当該実質的な変更とする。

一 銀行法（昭和五十六年法律第五十九号）第二条第二項 に規定する銀行業（同法第三条 の規定により銀行業とみなされた営業を含む。）

二 保険業法（平成七年法律第百五号）第二条第七項 に規定する外国保険会社等の事業

三 ガス事業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五十一号）第二条第十項 に規定するガス事業

四 電気事業法（昭和三十九年法律第百七十号）第二条第一項第九号 に規定する電気事業

五 外国証券業者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六年法律第五号）第二条第二号 に規定する外国証券会社の事業

六 信託業法（平成十六年法律第百五十四号）第二条第六項 に規定する外国信託会社の事業

7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六号 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金額は、一億円を下らない金額で主務省令で定める金額とする。

8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六号 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金融機関は、次に掲げる金融機関とする。

- 一 信託業、保険業又は証券業を営む者
- 二 国際復興開発銀行及びアメリカ合衆国輸出入銀行
- 三 前二号に掲げる者のほか、業としての金銭の貸付け（物品の売買、運送、保管又は売買の媒介を業とする者がこれらの取引に付随して行うものを除く。）を主として行う者
- 四 前三号に掲げる者のいずれかに準ず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者

9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七号 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行為は、次に掲げる行為とする。

- 一 社債（外国において発行され又は募集されるもので、かつ、外国において支払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ものを除く。）でその募集が法第二十六条第一項 各号に掲げるもののうち特定のものに対してされるものの取得。ただし、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社債の取得を除く。
 - イ 銀行業を営む者又は前項第一号若しくは第三号に掲げる者が業として行う社債の取得
 - ロ 法第二十六条第一項第三号 又は第四号 に掲げるものが行う本邦通貨をもつて表示される社債の取得
 - ハ 取得の日から元本の償還の日までの期間が一年以下である社債の取得
 - ニ 取得の金額が一億円を下らない金額で主務省令で定める金額以下である社債の取得
 - ホ 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社債の取得
- 二 特別の法律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の発行する出資証券の取得

（対内直接投資等の届出及び変更勧告の送達等）

第三条 法第二十六条第二項 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等（以下「対内直接投資等」という。）であつて、法第二十七条第一項 及び法第五十五条の五第一項 に規定する相続、遺贈、法人の合併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は、次に掲げる行為に該当する対内直接投資等とする。

- 一 相続又は遺贈による会社の株式又は持分の取得
- 二 上場会社等以外の会社（次号及び第三号において「非上場会社」という。）の株式又は持分を所有する法人の合併により合併後存続する法人又は新たに設立される法人が当該株式又は持分を取得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取得
- 二の二 非上場会社の株式又は持分を所有する法人の分割により分割後新たに設立

される法人又は事業を承継する法人が当該株式又は持分を取得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取得

三 非上場会社の株式又は持分の取得（当該取得に係る当該非上場会社の株式の数若しくは出資の金額（以下この号において「株式等」という。）の当該非上場会社の発行済株式の総数若しくは出資の金額の総額（以下この号において「発行済株式等」という。）に占める割合又は当該取得をしたものが当該取得の後において所有することとなる当該非上場会社の株式等と当該取得をしたものを前条第四項の株式取得者とした場合に同項各号に掲げるものに該当することとなる非居住者である個人若しくは法人等が所有する当該非上場会社の株式等とを合計した株式等の当該非上場会社の発行済株式等に占める割合が百分の十以上となる場合の当該取得を除く。）であつて、次項各号に掲げる対内直接投資等に該当する非上場会社の株式又は持分の取得（上場会社等の株式に準ず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株式の取得を除く。）以外のもの

四 株式の分割、併合又は転換により発行される新株の取得

五 上場会社等の外国における発行又は募集に係る株式の外国における取得

六 上場会社等の外国における発行又は募集に係る新株予約権付社債又は新株予約権証券に係る新株予約権の行使により発行される新株又は当該会社の有する自己株式の取得

七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主務省令で定める行為

2 法第二十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審査が必要となる対内直接投資等に該当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対内直接投資等とする。

一 イ又はロ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業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業種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六号 に掲げる対内直接投資等にあつては、十億円に相当する額未満の金銭の貸付けを除く。）

イ 国の安全を損ない、公の秩序の維持を妨げ、又は公衆の安全の保護に支障を来すことになるおそれがある対内直接投資等に係る業種

ロ 我が国が経済協力開発機構の資本移動の自由化に関する規約第二条 b の規定に基づき留保している対内直接投資等に係る業種

二 法第二十七条第三項第二号 に掲げる対内直接投資等に該当す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対内直接投資等

三 外国為替令（昭和五十五年政令第二百六十号）第十一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財務大臣の指定に係る資本取引に当たる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対内直接投資等

3 法第二十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届出は、対内直接投資等を行おうとする日前

三月以内に、主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法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法第二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外国投資家（以下「外国投資家」という。）が同項第一号又は第二号に掲げるもの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外国投資家は、居住者である代理人（第七項及び第十二項の規定により送達される文書を受理する権限を有するものに限る。）により当該届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法第二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届出者の氏名、住所又は居所、国籍及び職業（法人その他の団体にあつては、その名称、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営んでいる事業の内容、資本金及び代表者の氏名）

二 対内直接投資等に係る事業目的

三 対内直接投資等の金額及び実行の時期

四 対内直接投資等を行おうとする理由

五 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6 法第二十七条第三項第一号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ものは、経済協力開発機構条約（同条約第五条（a）の規定に基づき決定された資本移動の自由化に関する規約に係る部分に限る。）及び世界貿易機関を設立するマラケシュ協定附属書一Bサービスの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とする。

7 法第二十七条第三項又は第六項の規定による対内直接投資等を行つてはならない期間の延長は、郵便若しくは民間事業者による信書の送達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九十九号）第二条第六項に規定する一般信書便事業者若しくは同条第九項に規定する特定信書便事業者による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信書便（以下この条及び第五条において「郵便等」という。）による送達又は交付送達により、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ものの住所、居所又は営業所に当該延長の期間を記載した文書を送達して行く。ただし、外国投資家が居住者である代理人により当該対内直接投資等の届出をしている場合には、当該代理人の住所、居所又は営業所に送達するものとする。

8 通常の手扱いによる郵便等によつて前項に規定する文書を発送した場合には、その郵便物又は民間事業者による信書の送達に関する法律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信書便物は、通常到達すべきであつた時に送達があつたものと推定する。

9 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は、通常の手扱いによる郵便等によつて第七項に規定する文書を発送する場合には、当該文書の送達を受けるべきもの（同項ただし書の場合にあつては、代理人。次項及び第十一項において同じ。）の氏名（法人その他の団体にあつては、その名称）、あて先及び当該文書の発送の年月日を確認するに足り

る記録を作成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10 第七項の交付送達は、当該行政機関の職員（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第十条第三号に掲げる事務に従事する日本銀行の職員を含む。）が第七項に規定する文書を送達すべき場所において、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ものに当該文書を交付して行う。ただし、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ものに異議がないときは、その他の場所において当該文書を交付することができる。

11 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は、第七項の交付送達は、前項の規定による交付に代え、当該各号に定める行為により行うことができる。

一 送達すべき場所において第七項に規定する文書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に出会わない場合 その使用人その他の従業者又は同居の者で当該文書の受領について相当のわきまのあるもの（次号において「使用人等」という。）に当該文書を交付すること。

二 第七項に規定する文書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その他使用人等が送達すべき場所にいない場合又はこれらの者が正当な理由なく当該文書の受領を拒んだ場合 送達すべき場所に当該文書を差し置くこと。

12 法第二十七条第五項又は第十項の規定による勧告又は命令は、郵便等による送達又は交付送達により、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ものの住所、居所又は営業所に当該勧告又は命令の内容を記載した文書を送達して行う。ただし、外国投資家が居住者である代理人により当該対内直接投資等の届出をしている場合には、当該代理人の住所、居所又は営業所に送達するものとする。

13 第八項から第十一項まで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勧告又は命令の内容を記載した文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八項中「前項」とあり、及び第九項中「第七項」とあるのは「第十二項」と、第十項中「第七項」とあるのは「第十二項」と、「第十条第三号」とあるのは「第十条第四号又は第六号」と、第十一項中「第七項」とあるのは「次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14 法第二十七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は、主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条 削除

第三章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の届出及び変更勧告の送達等）

第五条 法第三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以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という。）であつて、同項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ものは、次の各号

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とする。

一 イからニまでに掲げ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係る契約の締結（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係る契約の一方の当事者の変更によるものを除く。）であつて、指定技術（国の安全を損ない、公の秩序の維持を妨げ、又は公衆の安全の保護に支障を来すことになるおそれがあ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係る技術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技術をいう。以下この項及び第六条の四第二項第二号において同じ。）に係るもの

イ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基づき契約の相手方である非居住者（非居住者の本邦にある支店等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に支払うべき対価（渡航費及び本邦における滞在費を除く。以下この項において「技術導入契約の対価」という。）の額が一億円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

ロ 技術導入契約の対価の額が確定していない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

ハ 居住者が技術導入契約の対価として工業所有権その他の技術に関する権利の譲渡、これらに関する使用权の設定又は事業の経営に関する技術の指導を行おうとす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

ニ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の相手方である非居住者により総議決権の百分の五十以上の議決権の数を直接に保有されている会社である居住者が当該非居住者との間でしようとす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

二 前号イからニまでに掲げ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係る契約の条項の変更（指定技術を新たに追加するものに限る。）

三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第一号ロからニまでに掲げるものを除く。）に係る契約の条項の変更により技術導入契約の対価の額が一億円に相当する額を超えることとなるものであつて指定技術に係るもの

2 法第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は、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をしようとする日前三月以内に、主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第三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届出者の氏名、住所又は居所及び職業（法人にあつては、その名称、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営んでいる事業の内容、資本金及び代表者の氏名）

二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係る技術の種類及び対価

三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の実行の時期

四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をしようとする理由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係る契約の条項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4 法第三十条第三項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ものは、経済協力開発機構条約（同条 約第五条（a）の規定に基づき決定された経常的貿易外取引の自由化に関する

規約に係る部分に限る。)とする。

5 法第三十条第三項 又は第六項 の規定によ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をしてはならない期間の延長は、郵便等による送達又は交付送達により、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住所、居所又は営業所に当該延長の期間を記載した文書を送達して行う。

6 第三条第八項から第十一項まで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延長の期間を記載した文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八項中「前項」とあり、及び同条第九項から第十一項までの規定中「第七項」とあるのは、「第五条第五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7 法第三十条第五項 の規定又は同条第七項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十七条第十項 の規定による勧告又は命令は、郵便等による送達又は交付送達により、その送達を受けるべき者の住所、居所又は営業所に当該勧告又は命令の内容を記載した文書を送達して行う。

8 第三条第八項から第十一項までの規定は、前項に規定する勧告又は命令の内容を記載した文書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八項中「前項」とあり、及び同条第九項中「第七項」とあるのは「第五条第七項」と、同条第十項中「第七項」とあるのは「第五条第七項」と、「第十条第三号」とあるのは「第十条第四号又は第六号」と、同条第十一項中「第七項」とあるのは「第五条第七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9 法第三十条第七項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十七条第七項 の規定による通知は、主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

(法第二十七条 の技術的読替え)

第六条 法第三十条第七項 の規定による技術的読替えは、次の表のとおりとする。

読み替える規定 読み替えられる字句 読み替える字句

第二十七条第七項 第五項 第三十条第五項

第二十七条第八項 対内直接投資等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
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七条第九項 第三項又は第六項 第三十条第三項又は第六項

当該対内直接投資等 当該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

対内直接投資等を行う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をする

第二十七条第十項 第五項 第三十条第五項

対内直接投資等に係る内容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係る条項の全部若しくは一部

第三項又は第六項 同条第三項又は第六項

第二十七条第十一項 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が国の安全等

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 第三十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が同条第三項に規定する国の安全等に係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

対内直接投資等に係る内容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係る条項の全部若しくは一部
第二十七条第十二項 第五項から前項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対内直接投資等に係る内容 第七項から前項まで並びに第三十条第五項及び第六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係る条項の全部若しくは一部

(適用除外)

第六条の二 法第三十条第八項 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は、事業の経営に関する技術の指導に係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とする。

第三章の二 報告

(対内直接投資等の報告)

第六条の三 法第五十五条の五第一項 の規定による報告は、対内直接投資等を行つた日から起算して十五日以内に、主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法第五十五条の五第一項 の規定による報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外国投資家が法第二十六条第一項第一号 又は第二号 に掲げるものに該当する場合には、当該外国投資家は、居住者である代理人により当該報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法第五十五条の五第一項 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報告者の氏名、住所又は居所、国籍及び職業（法人その他の団体にあつては、その名称、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営んでいる事業の内容、資本金及び代表者の氏名）

二 対内直接投資等に係る事業目的

三 対内直接投資等の金額及び実行の日

四 その他主務省令で定める事項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の報告)

第六条の四 法第五十五条の六第一項 の規定による報告は、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をした日から起算して十五日以内に、主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なければならない

らない。

2 法第五十五条の六第二項 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は、次に掲げ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とする。

- 一 事業の経営に関する技術の指導に係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
- 二 指定技術以外の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

(法第五十五条の八 の規定に基づく報告)

第六条の五 財務大臣又は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は、法第五十五条の八 の規定に基づき、法第二十六条 、法第二十七条 、法第三十条 、法第五十五条の五 又は法第五十五条の六 の規定及びこの政令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の適用を受ける取引若しくは行為を行い、若しくは行つた者又は関係人に対し、当該取引又は行為の内容、実行の時期その他当該取引又は行為に関連する事項について報告を求める場合には、財務省令又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報告を求める事項を指定す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指定された事項の報告を求められた者は、財務省令又は主務省令で定める手続により、当該報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四章 雑則

(事業所管大臣)

第七条 法及びこの政令における事業所管大臣は、次の各号に掲げる事項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大臣とする。

- 一 会社（特別の法律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を含む。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の株式若しくは持分の取得若しくは譲渡又は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に関する事項 当該会社の営む事業の所管大臣
- 二 本邦における支店等の設置又は本邦にある支店等の種類若しくは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に関する事項 当該支店等の営む事業の所管大臣
- 三 本邦に主たる事務所を有する法人に対する金銭の貸付けに関する事項 当該法人の営む事業の所管大臣
- 四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関する事項 当該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係る技術を受け入れる事業の所管大臣
- 五 会社の発行する社債の取得に関する事項 当該会社の営む事業の所管大臣

(主務省令)

第七条の二 この政令における主務省令は、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の発する命令とする。

（告示の方法）

第八条 この政令の規定に基づく告示は、官報で行う。

（換算の方法）

第九条 法（第五章、第五十五条の五、第五十五条の六及び第五十五条の八（この政令の第六条の五に係る部分に限る。次条において同じ。）に限る。）及びこの政令並びにこれらに基づく命令の規定を適用する場合における外国通貨の本邦通貨への換算は、主務省令で定める区分に応じ主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る場合を除き、当該規定においてその額について当該換算をすべき取引又は行為が行われる日における法第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基準外国為替相場又は裁定外国為替相場を用いて行うものとする。

（事務の委任）

第十条 財務大臣又は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が法第六十九条第一項 の規定に基づき日本銀行に取り扱わせる法（第五章、第五十五条の五、第五十五条の六及び第五十五条の八に限る。）の施行に関する事務は、次に掲げる事務とする。ただし、財務大臣又は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が必要と認めるときは、財務省令又は主務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自らその事務を取り扱うことを妨げない。

- 一 法第二十七条第一項 及び法第三十条第一項 の規定に基づく届出の受理
- 二 法第二十七条第二項 及び第四項 並びに法第三十条第二項 及び第四項 の規定に基づく期間の短縮の通知その他当該期間の短縮に関する事務で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が定めるもの
- 三 法第二十七条第三項 及び第六項 並びに法第三十条第三項 及び第六項 の規定に基づく延長の期間を記載した文書の送付
- 四 法第二十七条第五項 及び法第三十条第五項 の規定に基づく勧告の内容を記載した文書の送付
- 五 法第二十七条第七項 （法第三十条第七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基づく応諾に関する通知の受理
- 六 法第二十七条第十項 （法第三十条第七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基づく命令の内容を記載した文書の送付
- 七 法第二十七条第十一項 （法第三十条第七項 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

む。)の規定に基づく取消しの通知

八 法第五十五条の五第一項 及び法第五十五条の六第一項 の規定に基づく報告の受理

九 第三条第九項（同条第十三項並びに第五条第六項及び第八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作成

十 第六条の五の規定に基づく報告の受理

十一 前各号に掲げる事務に附帯する事務

附 則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昭和五十四年法律第六十五号）の施行の日（昭和五十五年十二月一日）から施行する。

（外資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く認可の基準の特例等に関する政令等の廃止）

第二条 次に掲げる政令は、廃止する。

一 外資に関する法律第二十条の規定による聴聞の手續に関する政令（昭和二十五年政令第百八十二号）

二 外資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く認可の基準の特例等に関する政令（昭和二十七年政令第二百二十一号）

三 外資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日本銀行に取り扱わせる事務の範囲を定める政令（昭和二十七年政令第四百十二号）

四 外国投資家預金勘定に関する政令（昭和二十七年政令第四百二十七号）

（経過措置）

第三条 外国為替管理令（昭和五十五年政令第二百六十号。以下「新管理令」という。）による廃止前の外国為替管理令（昭和二十五年政令第二百三号。次項において「旧管理令」という。）第十七条又は第二十六条の規定に基づき認められ又は許可を受けた取引又は行為については、新管理令附則第三条第一項の規定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2 この政令の施行の際現に旧管理令第十七条の規定によりされている許可の申請に係る取引又は行為のうち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以下

「改正法」という。)による改正後の法(以下この項において「新法」という。)第二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については、当該申請は、この政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に同項の規定によりされた届出とみなして、新法(第三章、第四章及び第六章を除く。)及びこの政令の規定を適用する。

第四条 法第十一条に規定する外国為替公認銀行が改正法による廃止前の外資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六十三号。以下「旧外資法」という。)第九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り開設された外国投資家預金勘定の施行日の前日における残高を他の預金勘定と区分して経理する場合には、当該残高が区分して経理されている間、当該外国投資家預金勘定の残高の払戻しについては、新管理令第十一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五条 旧外資法の規定による認可、指定又は確認に際して旧外資法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付された条件については、あらかじめ主務大臣(旧外資法の規定による主務大臣をいう。)の承認を受けるべき旨を定めている条件のうち施行日において大蔵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第十一条の規定による事業所管大臣をいう。)が指定するものに限り、この政令の施行後においても、なお効力を有するものとし、その他の条件は、この政令の施行後においては、効力を失うものとする。

第六条 この政令の施行の際現に旧外資法第十条、第十一条第一項、第十二条第一項、第十三条第一項、第十三条の二又は第十三条の三の規定によりされている申請又は届出に係る取引又は行為については、この政令による廃止前の外資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基く認可の基準の特例等に関する政令(以下「旧特例政令」という。)及び外資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日本銀行に取り扱わせる事務の範囲を定める政令(以下「旧委任政令」という。)は、この政令の施行後においても、なお効力を有する。

第七条 旧外資法第十三条の二に規定する株式等又は旧外資法第十三条の三に規定する対価等若しくは対価等の請求権でその取得の日が施行日前であるものについては、旧特例政令第五条並びに旧委任政令第七号、第八号及び第十二号の規定は、この政令の施行後においても、なお効力を有する。

(厚生省組織令の一部改正)

第八条 厚生省組織令(昭和二十七年政令第三百八十八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

改正する。

第三十四条第三号中「外資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六十三号）」を「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二十八号）」に改める。

（通商産業省組織令の一部改正）

第九条 通商産業省組織令（昭和二十七年政令第三百九十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四十三条第二号中「技術援助契約」を「技術導入契約」に、「行なう」を「行う」に改め、同条第三号中「財産の取得」を「財産の取得等」に、「行なう」を「行う」に改める。

（運輸省組織令の一部改正）

第十条 運輸省組織令（昭和二十七年政令第三百九十一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運輸省組織令第一章中「株式等の取得」を「株式の取得等」に、「技術援助契約」を「技術導入契約」に改める。

附 則 （昭和五十六年九月二六日政令第二九一号）

この政令は、昭和五十六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昭和五十七年三月二七日政令第四八号） 抄

1 この政令は、銀行法の施行の日（昭和五十七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昭和五十九年六月一九日政令第一九五号）

この政令は、調和ある対外経済関係の形成を図るための国際通貨基金及び国際復興開発銀行への加盟に伴う措置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第五条の規定の施行の日（昭和五十九年七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三年三月二五日政令第四八号）

（施行期日）

1 この政令は、平成三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の一部改正に伴う経過措置）

2 商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二年法律第六十四号）附則第十一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新株の発行に際し第四条の規定による改正前の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第二条第十三項第三号に規定する新株を取得する場合及び同法附則第十七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利益の処分により同項第五号に規定する新株を取得する場合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3 この政令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三年十一月二七日政令第三五四号）

（施行期日）

1 この政令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の日（平成四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この政令の施行前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六年一二月二六日政令第四一一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ガス事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六年法律第四十二号）の施行の日（平成七年三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六年一二月二八日政令第四一九号）

この政令は、世界貿易機関を先立するマラケシュ協定が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七年一〇月一八日政令第三五九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電気事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以下「改正法」という。）の施行の日（平成七年十二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七年一二月二二日政令第四二六号）

この政令は、保険業法の施行の日（平成八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九年一二月二五日政令第三八四号）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の日（平成十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改正後の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第六条の四第二項の規定は、この政令の施行の日以後にする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第三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以下この条において「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という。）について適用し、同日前にした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三条 この政令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前条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事項に係るこの政令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一一年一二月二七日政令第四三一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平成十二年三月二十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二年六月七日政令第三〇七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平成十三年一月六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三年三月二八日政令第七七号）

（施行期日）

1 この政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三条第一項の改正規定は、平成十三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2 改正後の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第六条の四第二項の規定は、この政令の施行の日以後にする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第三十条第一項に規定する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以下この項において「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という。）について適用し、同日前にした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3 この政令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前項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事項に係るこの政令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一四年三月二〇日政令第五四号）

（施行期日）

1 この政令は、平成十四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転換社債等に関する経過措置）

2 商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三年法律第二百二十八号）附則第七条

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転換社債又は新株引受権付社債に係るこの政令による改正前の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第三条第一項第六号及び第七号に規定する新株の取得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一四年一二月一八日政令第三八六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平成十五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五年一二月三日政令第四七六号） 抄

この政令は、平成十六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六年一二月二八日政令第四二九号） 抄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政令は、法の施行の日（平成十六年十二月三十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八年三月一七日政令第四二号）

この政令は、会社法の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命令 (대내직접투자등에 관한 명령)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命令

(昭和五十五年十一月二十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一号)

最終改正：平成一八年四月二八日内閣府・総務省・財務省・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環境省令第二号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昭和五十五年政令第二百六十一号）第二条 から第五条 まで、第八条 、第十三条 及び第十四条 の規定に基づき、並びに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二十八号）の規定を実施するため、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命令を次のように定める。

（趣旨）

第一条 この命令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以下「法」という。）第五章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等及び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について、報告及び届出の手續その他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対内直接投資等の定義に関する事項）

第二条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政令（以下「令」という。）第二条第七項 に規定する主務省令で定める金額は、金銭の貸付けでその期間が一年を超え五年以下であるものについては二億円に相当する額とし、その期間が五年を超えるものについては一億円に相当する額とする。

2 令第二条第九項第一号 二に規定する主務省令で定める金額は、取得の日から元本の償還の日までの期間が一年を超え五年以下である社債の取得については二億円に相当する額とし、当該期間が五年を超える社債の取得については一億円に相当する

額とする。

（対内直接投資等の届出等）

第三条 令第三条第一項第三号 に規定する上場会社等の株式に準ずるものとして主務省令で定める株式は、証券取引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号）第二条第十六項 に規定する証券取引所への上場前（上場申請から上場までの間に限る。）又は同法第六十七条第一項 に規定する証券業協会への登録前（登録申請から登録までの間に限る。）に行われる募集若しくは売出しに係る株式とする。

2 令第三条第一項第七号 に規定する主務省令で定める行為は、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とする。

一 組織変更前の会社の株式又は持分を所有するものによる当該株式又は持分に代わる組織変更後の会社の株式又は持分の取得

二 貸付金債権、社債又は特別の法律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の発行する出資証券の相続又は遺贈による取得

三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号 に規定する会社の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に関し行う同意のうち、当該変更が行われる前の当該会社の事業目的及び当該変更が行われた後の当該会社の事業目的のいずれもが、次項に規定する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令第七条 に規定する事業所管大臣をいう。以下同じ。）が定める業種に該当しない会社の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に関し行う同意

四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五号 に規定する支店、工場その他の事業所（以下「支店等」という。）の種類又は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のうち、当該変更が行われる前の当該支店等の事業目的及び当該変更が行われた後の当該支店等の事業目的のいずれもが、次項に規定する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が定める業種に該当しない支店等の種類又は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

3 令第三条第二項第一号 に規定する主務省令で定める業種は、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が定める業種とする。

4 令第三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主務省令で定める対内直接投資等は、別表第一に掲げる国（地域を含む。以下同じ。）以外の国の外国投資家により行われる対内直接投資等（法第二十六条第一項第三号 又は第四号 に該当する外国投資家により行われる対内直接投資等を除く。）とする。

5 令第三条第三項 の規定に基づき届出をしようとするものは、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様式による届出書を、日本銀行を経由して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提出すべき届出書の通数は、当該事業所管大臣の数に三を加えた数とする。

一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一号 及び第三号 並びに令第二条第九項第二号 に規定する株式又は持分の取得 別紙様式第一

二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株式又は持分の譲渡 別紙様式第二

三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号 に規定する会社の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に関し行う同意 別紙様式第三

四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五号 に規定する支店等の設置 別紙様式第四

五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五号 に規定する支店等の種類又は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 別紙様式第五

六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六号 に規定する金銭の貸付け 別紙様式第六

七 令第二条第九項第一号 に規定する社債の取得 別紙様式第七

6 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届出書を受理したときは、当該届出書にその旨を記入し、そのうち一通を届出受理証として届出者に交付するものとする。

7 令第三条第十四項 の規定に基づき法第二十七条第七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ようとするものは、別紙様式第八による通知書を、日本銀行を経由して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提出すべき通知書の通数は、当該事業所管大臣の数に一を加えた数とする。

第四条 削除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の届出等)

第五条 令第五条第一項第一号 に規定する主務省令で定める技術は、別表第二に掲げる技術とする。

2 令第五条第二項 の規定に基づき届出をしようとする居住者は、別紙様式第九による届出書を、日本銀行を経由して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三条第五項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3 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届出書を受理したときは、当該届出書にその旨を記入し、そのうち一通を届出受理証として届出者に交付するものとする。

4 令第五条第九項 の規定に基づき法第三十条第七項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十七条第七項 の規定による通知をしようとする者は、別紙様式第十による通知書を、日本銀行を経由して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三条第七項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第六条 削除

（対内直接投資等の報告）

第六条の二 令第六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報告をしようとするものは、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様式による報告書を、日本銀行を経由して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提出すべき報告書の通数は、当該事業所管大臣の数に一を加えた数とする。

- 一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一号 及び第三号 並びに令第二条第九項第二号 に規定する株式又は持分の取得 別紙様式第十一
- 二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二号 に規定する株式又は持分の譲渡 別紙様式第十二
- 三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号 に規定する会社の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に関し行う同意 別紙様式第十三
- 四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五号 に規定する支店等の設置 別紙様式第十四
- 五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五号 に規定する支店等の種類又は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 別紙様式第十五
- 六 法第二十六条第二項第六号 に規定する金銭の貸付け 別紙様式第十六
- 七 令第二条第九項第一号 に規定する社債の取得 別紙様式第十七

（技術導入契約の締結等の報告）

第六条の三 令第六条の四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報告をしようとする居住者は、別紙様式第十八による報告書を、日本銀行を経由して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前条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令第六条の五の規定に基づく報告）

第七条 法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ものが、次の各号に掲げる行為をした場合には、当該行為の区分に応じ、当該各号に定める様式による報告書を、当該行為を行つ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日本銀行を経由して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提出すべき報告書の通数は、当該事業所管大臣の数に一を加えた数とする。

- 一 当該届出に係る株式、持分（特別の法律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の発行する出資証券を含む。以下同じ。）若しくは社債の取得又は金銭の貸付け 別紙様式第十九
- 二 当該届出に係る株式又は持分の取得をした後における当該株式又は持分の全部又は一部の処分 別紙様式第二十

三 当該届出に係る金銭の貸付け又は社債の取得をした後における当該貸付け又は社債の元本の全部又は一部の返済金又は償還金の受領（期限前返済又は期限前償還を受けた場合を含む。） 別紙様式第二十一

四 当該届出に係る支店等の設置の中止（法第二十七条第七項 又は同条第十項の規定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等の中止の勧告の応諾又は中止の命令による中止を除く。）又は当該支店等の廃止 別紙様式第二十二

（期間の短縮に関する通知等）

第八条 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が法第二十七条第二項 ただし書及び同条第四項 又は法第三十条第二項 ただし書及び同条第四項 の規定により取引又は行為を行つてはならない期間を短縮するときは、第三条第六項又は第五条第三項に規定する届出受理証に短縮の期間を記入して当該届出受理証を届出者に交付する方法又は短縮の期間を記載した通知書を届出者に交付する方法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勧告又は命令の取消しの通知）

第九条 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は、法第二十七条第十一項 の規定に基づき、同条第七項 の規定により対内直接投資等に係る内容の変更の勧告を応諾する旨の通知をしたもの又は同条第十項 の規定により対内直接投資等に係る内容の変更を命じられたものに対し、当該勧告又は命令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すときは、当該応諾する旨の通知をしたもの又は当該内容の変更を命じられたものに対し、当該取消しの内容を記載した通知書を交付する方法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は、法第三十条第七項 において準用する法第二十七条第十一項の規定に基づき令第五条第七項 に規定する勧告又は命令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消す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事務の委任）

第十条 令第十条第二号 に規定する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の定める事務は、次に掲げる事務とする。

一 法第二十七条第一項 又は法第三十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届出を受理した日から二週間を経過した日の翌日において、当該日から当該届出に係る取引又は行為を行うことができる旨を届出受理証に記入する事務。ただし、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が特に審査を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て期間を短縮しない旨を日本銀行に通知した場合における当該事務を除く。

二 前号に掲げる事務のほか、財務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が別に指示した場合に

おける当該指示した日に届出受理証に短縮の期間を記入する事務

附 則

1 この命令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昭和五十四年法律第六十五号）の施行の日（昭和五十五年十二月一日）から施行する。

2 次に掲げる省令は、廃止する。

一 外資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昭和二十五年外資委員会規則第二号）

二 外国投資家が株式又は持分を取得する場合のうち資産の運用にあたるものを定める省令（昭和四十二年大蔵省、厚生省、農林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建設省令第一号）

三 外資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日本銀行に取り扱わせる事務の範囲を定める省令（昭和四十二年大蔵省、厚生省、農林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建設省令第二号）

四 沖縄の復帰に伴う外国投資家に係る株式の所有の認可等に関する省令（昭和四十七年大蔵省、厚生省、農林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建設省令第二号）

3 この命令の施行の際現に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よる廃止前の外資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六十三号。以下「旧外資法」という。）第十条、第十一条第一項、第十二条第一項、第十三条第一項、第十三条の二又は第十三条の三の規定によりされている申請又は届出に係る取引又は行為については、この命令による廃止前の外資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以下「旧施行規則」という。）、外国投資家が株式又は持分を取得する場合のうち資産の運用にあたるものを定める省令及び外資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日本銀行に取り扱わせる事務の範囲を定める省令は、この命令の施行後においても、なお効力を有する。

4 旧外資法第十三条の二に規定する株式等又は旧外資法第十三条の三に規定する対価等若しくは対価等の請求権でその取得の日がこの命令の施行の日の前であるものについては、旧施行規則第七条、第八条及び第十四条の規定は、この命令の施行後においても、なお効力を有する。

附 則 （昭和五十六年九月二六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一号）

この命令は、昭和五十六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昭和五十九年六月一九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一号）

この命令は、調和ある対外経済関係の形成を図るための国際通貨基金及び国際復興開発銀行への加盟に伴う措置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第五条の規定の施行の日（昭和五十九年七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昭和六〇年六月二〇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一号）

この命令は、昭和六十年七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昭和六〇年十一月二〇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二号）

この命令は、昭和六十年十二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元年四月六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一号）

この命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三年一二月二一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一号）

この命令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の日（平成四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七年七月三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一号）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命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次条第二項に定めるものを除き、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以下「法」という。）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この命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前にされた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以下「施行日前の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という。）で、施行日前に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等を行ってはならない期間（同条第三項又は第六項の規定により当該期間が延長された場合には、当該延長された期間）が満了したもの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三条 この命令の施行の際現に法第二十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等を行ってはならない期間が満了していない施行日前の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で、この命令による改正後の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命令別表第一に該当するため法第二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対内直接投資等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施行日の前日において当該期間が満了したものとみなして、当該届出をした外国投資家は、施行日以後当該対内直接投資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届出は、当該対内直接投資等が行われた日において同項本文の規定によりされた報告とみなす。

2 施行日前にされた法第二十七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勧告、同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十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四条 この命令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取引又は行為に係るこの命令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一〇年三月一九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
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一号）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命令は、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
の日（平成十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次条第二項に定めるものを除き、この命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
いう。）前に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による改正前の外
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以下「旧法」という。）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りされた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以下「施行日前の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
等」という。）で、施行日前に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等を行ってはなら
ない期間（同条第三項又は第六項の規定により当該期間が延長された場合には、当
該延長された期間）が満了したもの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三条 この命令の施行の際現に旧法第二十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
等を行ってはならない期間が満了していない施行日前の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
で、この命令による改正後の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命令（以下「新令」という。）
第三条第三項に規定する大蔵大臣及び事業所管大臣が定める業種又は同条第四項
に規定する別表第一に掲げる国に該当するため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の一部
を改正する法律による改正後の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以下「新法」という。）
第五十五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り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対内直接投資等に該当
するものについては、施行日の前日において当該期間が満了したものとみなして、当該届
出をした外国投資家は、施行日以後当該対内直接投資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
合において、当該届出は、当該対内直接投資等が行われた日において同項本文の規
定によりされた報告とみなす。

2 施行日前にされた旧法第二十七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勧告、同条第七項の規
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十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については、な
お従前の例による。

第四条 新令第三条第二項第三号及び第四号の規定は、施行日以後にする新法
第二十六条第二項第四号に規定する会社の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に関し行う同意

及び同項第五号に規定する本邦にある支店等の種類又は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以下この条において「会社の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に関し行う同意等」という。）について適用し、同日前にした会社の事業目的の実質的な変更に関し行う同意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五条 この命令の別紙様式第一から第二十二までによる届出書等については、当分の間、この命令による改正前の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命令の別紙様式第八から第十五まで、第十七、第十八、第一から第七まで、第十六、第十九から第二十二までによる届出書等を取り繕い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六条 この命令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事項に係るこの命令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一二年五月二三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一号）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命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別表第一に第百五十九号を加える改正規定は、投資の促進及び保護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ロシア連邦政府との間の協定が日本国について効力を生ずる日（平成十二年五月二十七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次条第二項に定めるものを除き、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以下「法」という。）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この命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前にされた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以下「施行日前の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という。）で、施行日前に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等を行ってはならない期間（同条第三項又は第六項の規定により当該期間が延長された場合には、当該延長された期間）が満了したもの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三条 この命令の施行の際現に法第二十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等

を行ってはならない期間が満了していない施行日前の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で、この命令による改正後の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命令別表第一に掲げる国に該当するため法第五十五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り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対内直接投資等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施行日の前日において当該期間が満了したものとみなして、当該届出をした外国投資家は、施行日以後当該対内直接投資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届出は、当該対内直接投資等が行われた日において同項本文の規定によりされた報告とみなす。

2 施行日前にされた法第二十七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勧告、同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十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四条 この命令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事項に係るこの命令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一二年八月二一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二号）

1 この命令は、内閣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八号）の施行の日（平成十三年一月六日）から施行する。

2 この命令の別紙様式第一から第七まで及び第九による届出書については、当分の間、この命令による改正前の別紙様式第一から第七まで及び第九による届出書を取り繕い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附 則 （平成一二年一二月一日総理府・大蔵省・文部省・厚生省・農林水産省・通商産業省・運輸省・郵政省・労働省・建設省令第三号）

この命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三年三月二八日内閣府・総務省・財務省・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令第一号）

この命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三年一二月二日内閣府・総務省・財務省・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令第二号）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命令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次条第二項に定めるものを除き、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以下「法」という。）第二十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この命令の施行の日（以下「施行日」という。）前にされた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以下「施行日前の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という。）で、施行日前に同条第二項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等を行ってはいない期間（同条第三項又は第六項の規定により当該期間が延長された場合には、当該延長された期間）が満了したもの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第三条 この命令の施行の際現に法第二十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対内直接投資等を行ってはいない期間が満了していない施行日前の届出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で、この命令による改正後の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命令別表第一に掲げる国に該当するため法第五十五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より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対内直接投資等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施行日の前日において当該期間が満了したものとみなして、当該届出をした外国投資家は、施行日以後当該対内直接投資等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届出は、当該対内直接投資等が行われた日において同項本文の規定によりされた報告とみなす。

2 施行日前にされた法第二十七条第五項の規定による勧告、同条第七項の規定による通知又は同条第十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係る対内直接投資等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

第四条 この命令の施行前にした行為及びこの附則の規定によりなお従前の例によることとされる事項に係るこの命令の施行後にした行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は、なお

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平成一四年三月二八日内閣府・総務省・財務省・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令第一号）

- 1 この命令は、平成十四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 2 この命令の別紙様式第七及び第十七による届出書等については、当分の間、この命令による改正前の別紙様式第七及び第十七による届出書等を取り繕い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附 則 （平成一四年九月二〇日内閣府・総務省・財務省・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環境省令第一号）

この命令は、平成十四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五年三月二七日内閣府・総務省・財務省・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環境省令第一号）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命令は、平成十五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別紙様式第七及び第十七の改正規定中「転換社債及び新株引受権付社債」を「新株予約権付社債等」に改正する部分については、平成十七年一月一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第二条 この命令による改正後の別紙様式第一から第三まで、別紙様式第六及び第七、別紙様式第九、別紙様式第十一から第十三まで、別紙様式第十六から第十八まで及び別紙様式第二十による届出書等については、当分の間、この命令による改正前の別紙様式による届出書等を取り繕い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附 則 （平成一六年三月一九日内閣府・総務省・財務省・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環境省令第一号）

この命令は、平成十六年四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 （平成一八年四月二八日内閣府・総務省・財務省・文部科学省・厚生労働省・農林水産省・経済産業省・国土交通省・環境省令第二号）

この命令は、会社法の施行の日（平成十八年五月一日）から施行する。

別表第一 （第三条関係）

- 一 アイスランド
- 二 アイルランド
- 三 アメリカ合衆国
- 四 アラブ首長国連邦
- 五 アルジェリア
- 六 アルゼンチン
- 七 アルバニア
- 八 アンゴラ
- 九 アンティグア・バーブーダ
- 一〇 イスラエル
- 一一 イタリア
- 一二 イラン
- 一三 インド
- 一四 インドネシア
- 一五 ウガンダ
- 一六 ウルグアイ
- 一七 英国
- 一八 エクアドル
- 一九 エジプト
- 二〇 エストニア
- 二一 エチオピア
- 二二 エルサルバドル

- 二三 オーストラリア
- 二四 オーストリア
- 二五 オマーン
- 二六 オランダ
- 二七 ガーナ
- 二八 ガイアナ
- 二九 カタール
- 三〇 カナダ
- 三一 ガボン
- 三二 カメルーン
- 三三 ガンビア
- 三四 カンボジア
- 三五 ギニア
- 三六 ギニアビサウ
- 三七 キプロス
- 三八 キューバ
- 三九 ギリシャ
- 四〇 キルギス
- 四一 グアテマラ
- 四二 クウェート
- 四三 グルジア
- 四四 グレナダ
- 四五 クロアチア
- 四六 ケニア
- 四七 コートジボワール
- 四八 コスタリカ
- 四九 コロンビア
- 五〇 コンゴ共和国
- 五一 コンゴ民主共和国
- 五二 サウジアラビア
- 五三 サモア
- 五四 ザンビア
- 五五 シエラレオネ
- 五六 ジブチ

- 五七 ジャマイカ
- 五八 シリア
- 五九 シンガポール
- 六〇 ジンバブエ
- 六一 スイス
- 六二 スウェーデン
- 六三 スーダン
- 六四 スペイン
- 六五 スリナム
- 六六 スリランカ
- 六七 スロバキア
- 六八 スロベニア
- 六九 スワジランド
- 七〇 セネガル
- 七一 セントクリストファー・ネーヴィス
- 七二 セントビンセント
- 七三 セントルシア
- 七四 ソロモン
- 七五 タイ
- 七六 大韓民国
- 七七 台湾
- 七八 タンザニア
- 七九 チェコ
- 八〇 チャド
- 八一 中央アフリカ
- 八二 中華人民共和国
- 八三 チュニジア
- 八四 チリ
- 八五 デンマーク
- 八六 ドイツ
- 八七 トーゴ
- 八八 ドミニカ
- 八九 ドミニカ共和国
- 九〇 トリニダード・トバゴ

九一 トルコ
九二 ナイジェリア
九三 ナウル
九四 ナミビア
九五 ニカラグア
九六 ニジェール
九七 ニュージーランド
九八 ネパール
九九 ノルウェー
一〇〇 バーレーン
一〇一 ハイチ
一〇二 パキスタン
一〇三 パナマ
一〇四 バヌアツ
一〇五 バハマ
一〇六 パプアニューギニア
一〇七 パラグアイ
一〇八 バルバドス
一〇九 ハンガリー
一一〇 バングラデシュ
一一一 フィジー
一二二 フィリピン
一二三 フィンランド
一二四 ブータン
一二五 ブラジル
一二六 フランス
一二七 ブルガリア
一二八 ブルキナファソ
一二九 ブルネイ
一三〇 ブルンジ
一三一 ベトナム
一三二 ベナン
一三三 ベネズエラ
一三四 ベリーズ

一二五 ペルー
一二六 ベルギー
一二七 ポーランド
一二八 ボツワナ
一二九 ボリビア
一三〇 ポルトガル
一三一 香港
一三二 ホンジュラス
一三三 マーシャル
一三四 マカオ
一三五 マケドニア旧ユーゴスラビア共和国
一三六 マダガスカル
一三七 マラウイ
一三八 マリ
一三九 マルタ
一四〇 マレーシア
一四一 ミクロネシア
一四二 南アフリカ共和国
一四三 ミャンマー
一四四 メキシコ
一四五 モーリシャス
一四六 モーリタニア
一四七 モザンビーク
一四八 モナコ
一四九 モルディブ
一五〇 モルドバ
一五一 モロッコ
一五二 モンゴル
一五三 ヨルダン
一五四 ラオス
一五五 ラトビア
一五六 リトアニア
一五七 リヒテンシュタイン
一五八 ルーマニア

一五九 ルクセンブルク

一六〇 ルワンダ

一六一 レソト

一六二 レバノン

一六三 ロシア

別表第二 （第五条関係）

技術

一 航空機に関する技術であつ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イ 航空機の設計、製造又は使用に関するもの

ロ 航空機の部分品若しくは付属装置の設計、製造又は使用に関するもの

二 武器に関する技術であつ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イ 武器の設計、製造又は使用に関するもの

ロ 武器の部分品若しくは付属品の設計、製造又は使用に関するもの

ハ 軍事用電子機器の製造に関するもの

三 火薬類の製造に関する技術

四 原子力に関する技術であつ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イ 原子炉（核融合炉を含む。以下同じ。）若しくはその部分品、付属装置若しくは構成材又は原子力用タービン若しくは原子力用発電機の設計、製造又は使用に関するもの

ロ 核燃料の設計、製造、使用若しくは再処理又はこれらに用いる装置の設計若しくは製造に関するもの

ハ 放射線発生装置の設計、製造若しくは利用又は放射性物質の利用、処理若しくはこれらに用いる装置の設計若しくは製造に関するもの

ニ 原子炉によらない核反応の利用に関するもの

五 宇宙開発に関する技術であつて、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もの

イ 宇宙飛しょう体（気象観測用ロケットを除く。以下同じ。）若しくは宇宙飛しょう体の打上げ、誘導制御、追跡若しくは利用のために特に設計された装置又はこれらの部分品、付属装置若しくは材料の設計、製造又は使用に関するもの

ロ 宇宙飛しょう体の開発のために特に設計された試験装置又はその部分品、付属装置若しくは材料の設計、製造又は使用に関するもの

ハ 宇宙飛しょう体の推力源の設計、製造又は使用に関するもの

別紙様式第一

別紙様式第二

別紙様式第三

別紙様式第四

別紙様式第五

別紙様式第六

別紙様式第七

別紙様式第八

別紙様式第九

別紙様式第十

別紙様式第十一

別紙様式第十二

別紙様式第十三

別紙様式第十四

別紙様式第十五

別紙様式第十六

別紙様式第十七

別紙様式第十八

別紙様式第十九

別紙様式第二十

別紙様式第二十一